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5차)

2020. 4. 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h·well
국민건강보험

Ⅰ 목적 및 기본원칙

❑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정례브리핑(’ 20.4.1.)

○ 요양보험운영과-1438호(2020.4.1.) “노인장기요양(주야간보호)기관 휴원 연장 권고 안내”

❑ 목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야간보호기관 휴원 권고 연장을 고려하여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1차, 2차, 3차, 4차)」에 이어 5차 지침을 추가 안내

❑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원칙적으로 2020년 4월(급여제공월 기준)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

※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특례 기준은 4차 지침에 준해 적용함.

○ 주요내용 : 주야간보호기관 무기한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지침 변경

구분	4차 지침	5차 지침
적용기간	3.23~4.5.(2주간)	4.6.~4.30.(약 4주간)
지원대상	○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 제공 시	○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
최소 이용일수	○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해당월 최소 1일 이상 이용자	○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20.2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이용자
보상일수	○ 최대 10일	○ 최대 17일(4월 공휴일 제외)
보상비용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산정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초과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산정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전액 산정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초과~50% 이하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 전액 산정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50% 초과~70% 이하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 전액 산정
인력배치	○ 필수인력은 최소 3명 배치, 긴급돌봄 수급자 증가 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 좌동

Ⅱ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 면역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권고 연장에 따라 실제 휴원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인정 확대 운영

○ **휴원 권고에 따라 2020.4.6~30.**(약 4주간, 평일 기준)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③ 휴원 요건 충족(긴급돌봄이용자가 정원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에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최대 17일)' 청구 가능**

- (대상기관) 긴급돌봄 이용자 수가 **정원 대비 70% 이하인 경우만 지원**
- (보상비용) ① 긴급돌봄 이용자 → 급여비용 100% 지급
  ② 긴급돌봄 **미이용자 → 해당 일에 해당 기관의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구간에 따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20% 차등 지급**

<주야간보호기관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1. **장기요양기관은 휴원권고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문자, 유선 등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 :** 장기요양기관이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2.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비율 준수

3.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야 함**(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 만 산정 시에도 동일함.

❑ 휴원 권고 이행기관의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기준

◈ (기본원칙) 2020년 4.6.~4.30.에 한하여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에 대해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이하 '코로나 특례비용')'을 최대 17일을 인정하여 추가 산정 … 산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휴원 시에도 기존 고시 기준대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관이 선택하여 청구 가능

◈ (주요원칙)

① (대상) 2020.3.31.까지 4월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수급자(4월분)이면서, 2020.2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 … 3월과 달리 4월은 휴원권고가 4.1.부터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월 중 최소 하루 이용 기준을 삭제함.

② (인정일수)

적용기간	'코로나 특례비용' 인정 일수
(공통사항) 4차 지침에도 불구하고, 4.1.~30.까지 적용하는 '코로나 특례비용'은 해당월(4월) 최소 1일 이용 요건을 대신하여 **2020년 2월 중 최소 1일 실제 이용 요건을 충족 시 산정**함.	
4.1. ~4.5 (참고)	**휴원(긴급돌봄 제공) 이행 시 '코로나 특례비용' 최대 3일 인정(평일 기준)** ①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이하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전액 공단부담) 산정 ②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초과시 이용예정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 산정
4.6. ~4.30.	**긴급돌봄이용자가 70% 이하(소수점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일자에 한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최대 17일 인정(평일 기준)**

③ (인정비용) 2020.3.31.기준 공단에 급여일정이 적기 통보된 일자(월~금요일, 공휴일 제외)의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20% (사망일, 해외출국일 적용불가) 지급

* 일자별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에 따른 인정비용 세부기준

구분	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이하	31 ~ 50% 이하	51~ 70% 이하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 기준)	60%	40%	20%
	본인부담금 포함한 전액 공단 지급		

※ 4월분은 반드시 3월말('20.3.31.) 기준 적기통보 내역(일정등록 포함)에 대해서만 산정 가능하며, 4월 당월 수정(추가) 통보 건은 산정 불가

※ 고시 제31조의'라-3'의 60%(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의 60%)를 최대 한도로 함.

④ (유의사항) 휴원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7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불가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5일은 고시 기준 충족 시에 4월 중 산정 가능

◈ (산정기준)

① 공단에 2020.3.31.기준 4월분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

② 2020.2.1.~2. 29.까지 월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

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및 월 중 1일 이용요건을 충족 시 지급하나,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함.

④ 2020. 4월에 긴급돌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 또는 4.6.~30.기간에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7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일체 산정불가

⑤ 필수 인력배치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3p)을 준수하여야 함.

⑥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해당 월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과 '미이용일 산정비용(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코로나 특례비용')의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 월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예외적용) … 2020.3.~ 4. 급여제공분 적용

① '코호트 격리' 또는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과 병설 운영

② '코호트 격리' 또는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입소형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만 해당되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병설 운영

③ '코호트 격리' 시행 중인 의료기관과 동일 건물에서 운영

④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의 소속 종사자 또는 이용자 중 확진자(밀접 접촉자)가 발생하여 지자체(보건소 등)으로부터 폐쇄, 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 ①, ②, ③,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 긴급돌봄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특례비용 산정을 위한 필수 인력은 배치하고, ▲ 병설 운영시설과 물리적 장소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휴원 안내만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코로나 특례비용'을 인정함. (병설기관의 '코호트 격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필수 보관)

※ 이 경우도 2020.3. 급여제공분은 월 중 1일 이용 요건 유지됨.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수납

○ **(월한도액) 미포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포함됨.

○ **(중복급여 사용)**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코로나 특례비용'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긴급돌봄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 제외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 입소자수, ② 월 가산 기준금액, ③ 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

①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 일자의 '입소자 수'에서 제외**
②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정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

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급여제공일수'에서 제외**(종사자가 배치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

※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

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 급여비용(5일) 또는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한시적 지원금)**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75조의2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준수사항)** '코로나 특례비용' 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을 이행 시 지급하므로 ① 공단에서 매일 실시예정인 긴급돌봄 이용률 실태확인에 협조 필요 ②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보관 필요

⇨ 추후 긴급돌봄 이용현황 등록 전산시스템 개발 시 전산입력 필요

○ **(청구기간) 2020. 5. 27. ~ 2020. 7. 31. 한시적 청구 가능(4월분)**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

○ **(청구종료일) 2020. 7. 31.** …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

○ **(행정사항)**

- '코로나 특례비용' 4월분은 **2020. 5. 27.이후 청구 전산화면이 오픈**되므로 **구체적 전산청구방법은 2020. 5. 27.이후 별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 안내 예정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최대 월 5일) 대상자만 우선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청구전산화면)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관리(주야간보호) /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에 등록

❑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종사자 미배치)한 경우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

○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 [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